

## 반나치법, 나치 상징 등 사용행위에 3년 자유형

독일의 ‘반나치법’은 영어의 ‘Anti-Nazi Law’를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반나치법’이라는 명칭의 단행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나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종사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법들을 망라해서 편의상 ‘반나치법’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독일 「형법」 제86조와 제86조a, △동법 제130조 제3항, 그리고 △나치정권 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을 들 수 있다.

### ● 독일 「형법」 제86조, 제86조a

일반적으로 ‘반나치법’이라고 하면 독일 「형법」 제86조와 제86조a를 가리킨다. 이 조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 수단, 또는 상징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86조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적인 정당 혹은 단체로 판결이 난 조직의 선전 수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헌적 정당 혹은 단체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치를 계승하거나 표방하는 정당을 들 수 있다.

제86조a는 위와 같은 위헌적 단체의 상징을 반포하거나 제조, 보관, 반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나치의 독수리 문장, 나치 친위대 휘장(SS)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하일 히틀러’라는 구령에 맞춰 한쪽 팔을 높이 드는 나치식 인사법이라든가 나치 군복 등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7년 베를린의회 앞에서 나치식 인사법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찍은 중국인 남성 관광객 2명이 이적단체 상징을 사용한 혐의로 독일

경찰에 체포되어 약 66만 원(500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 ● 독일 「형법」 제130조제3항

‘아우슈비츠 거짓말’ 조항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네오나치가 득세하던 1994년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반나치법’이 바로 이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국제형법 제6조제1항에 정한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찬양, 부인, 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형법’이란, 그 어떤 국제기구의 형법이 아니라 독일 「형법」의 부속법률로서의 국제형법전(Völkerstrafgesetzbuch, VStGB)을 지칭한다.

### 대량살해(Völkermord)

**국제형법 제6조** ① 특정 국가, 인종, 종교 또는 민족에 속한 사람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시키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종신형에 처한다.

1. 위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자
2. 위 집단의 구성원에게 독일형법 제226조(중상해 重傷害)에 명시된 유형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손상을 가한 경우
3. 위 집단의 구성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하게 한 경우
4. 위 집단의 구성원의 출생을 방해하는 조치를 한 경우
5. 위 집단에 속한 어린이를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를 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의 행위로서 침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